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95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5. 12. 18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5년 9월 11일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같은 해 11월 24일 우미경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해 각각 9월 15일과 11월 24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,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,
- 시·시민·주택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노력을 규정함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주거실태조사 시행 전에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(안 제5조의2).
- 서울시 및 시민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노력을 규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).
- 제8조(주거환경 조성)에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신설함(안 제8조).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는 주택정책을 수립·추진함에 있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고려

제5조의2제1항 중 “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할 수 있다”를 “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”을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의 책무) ①~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시의 책무) ①~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시는 주택정책을 수립·추진함에 있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제4조(시민의 노력 등) ①·② (생략) ③ 시·시민 및 주택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1.~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시민의 노력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1.~4. (현행과 같음) <u>5.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고려</u>
제5조의2(주거실태조사) ① 시장은 「주택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<u>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할 수 있다.</u> 1. <u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</u>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 재정착률 2~4. <생략>	제5조의2(주거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<u>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 1. <u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</u> ----- ----- 2~4. <생략>

현행	개정안
<p>② <생략></p> <p>제8조(주거환경 조성) 시·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~5. <생략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② <생략></p> <p>제8조(주거환경 조성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</u></p>